

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 <개정 2025. 7. 1.>

☞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근로복지공단

반송처

□□□-□□□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·센터)장

고용보험 피보험자격
신고사실 통지서 재증



■ 귀하는 입사/퇴직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/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.

수신자:

고용보험 피보험자격 []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(피보험자용)
[] 상실

피보험자	성명 주소	생년월일 (전화번호:)
자격취득 (고용)	자격취득일 취득신고일 (가입신청일)	상실사유
자격상실 (이직)	상실연월일 상실신고일 (탈퇴신청일)	
사업장관리번호 또는 노무제공플랫폼 등록번호	하수급인관리번호 또는 이용개시번호	사업장 명칭
사업장소재지	□□□-□□□	(전화번호:)

※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(total.comwel.or.kr)를 이용하시면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보다 정확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「고용보험법」 제15조제4항·제77조의5제1항·제77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·제125조의3제5항·제125조의9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.

※ 구직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므로 이를 넘기는 경우 받지 못합니다(「고용보험법」 제40조, 제48조,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).

-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,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
- 예술인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,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
-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,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3개월 이상 유지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춘 경우 지급

※ 재취업 지원을 위한 각종 구직정보는 고용24(www.work24.go.kr)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·센터)장 직인

문의 전화			
근로복지공단 주소		담당자	
전화번호		FAX번호	
문서번호			